예 산 총 칙

201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392, 162, 763	11,764,883
일반회계		387,090,504	11,612,715
특별회계		5,072,259	152,168
	기타특별회계	5,072,259	152,168
	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2,255,038	67,651
	천사섬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766,138	22,984
	주택사업특별회계	80,923	2,428
	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23,311	30,699
	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235,000	7,050
	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711,849	21,355

- 제 2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,213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871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